

의안번호	제 805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 숙 애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18년 3월 14일

#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 이숙애 의원 대표발의 )

의안  
번호

805

발의연월일: 2018년 3월 14일

발의자: 이숙애, 정영수, 이의영  
연철흠, 장선배, 황규철

## 1. 개정이유

독서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지역서점 등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조례명 변경

- 현행: 「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」
- 변경: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」

### 나. 조례 목적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문 수정(안 제1조)

- 지적능력 향상, 건전한 정서 함양, 독서교육 습관화  
→ 독서능력 향상, 지적·정서적 발달,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

### 다. 용어정의에 지역서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조)

- “지역서점”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.

라. 협력체구축에 지역 서점 등을 추가하여 조문 수정(안 제9조)

마. 학교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10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나. 관계법령: 붙임

다.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라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과학국제문화과 문화예술담당

마. 기 타

1) 입법예고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8-10호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” 를 “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,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” 을 “독서능력 향상을 통하여 지적·정서적 발달을 돕고,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행하여지” 를 “행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” 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” 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지역서점” 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수립하고 시행하여야” 를 “수립·시행하여야” 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과 지역서점,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10조, 「학교도서관진흥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<u>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,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</u>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학교 독서교육”이란 학생들에게 <u>행하여지는</u>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 독서태도, 지식, 기술, 흥미,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 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.</p> <p>2. “학교”란 「<u>유아교육법</u>」의 유치원과 「<u>초·중등교육법</u>」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독서능력</u> <u>향상을 통하여 지적·정서적 발달을 돕고,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행하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「<u>유아교육법</u>」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「<u>초·중등교육법</u>」 제2조 각 호-----.</p>

3. (생 략)

<신 설>

제3조(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 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 감”이라 한다)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 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 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공도서관과의 협력) 학교 의 장은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10조(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) ①

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 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3. (현행과 같음)

4. “지역서점”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 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 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 무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수립·시행하여야 -----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과 지역서 점,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 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.

<삭 제>

# 관계 법령

## □ 독서문화진흥법

[시행 2017.3.21.] [법률 제14428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

제10조(학교의 독서 진흥) 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,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
②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
1.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학교 도서관의 신설·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3.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
4.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·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

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, 학교 도서관의 설치·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④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⑤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.



## □ 학교도서관진흥법 ( 약칭: 학교도서관법 )

[시행 2016.12.20.] [법률 제14401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

- 제15조(독서교육 등) ① 교육부장관·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- 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.

## □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

[시행 2016.5.10.] [대통령령 제27129호, 2016.5.10., 타법개정]

- 제9조(독서교육 등) 교육부장관·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1.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 상황
  2. 학생들의 독서수준
  3.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